

	<h2 style="margin: 0;">교양교육 운영규칙</h2>		규정번호	3-4-31	
			제정일자	2017. 11. 10	
			개정일자	2020.03.01	
			개정번호	ver. 1	총페이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양미래대학교(이하 “본 대학” 이라고 한다) 학칙 제30조와 교육과정편성및운영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교양교과의 편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양 교육목표 및 인재상) 교양교육은 학칙 제1조의2에 기술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선택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성, 건강체육, 실용교양, 글로벌문화, 직업기초능력을 교수하고, 창의성, 개방성, 차별성, 관계능력, 바른 태도, 다양성, 윤리성 등을 함양하도록 한다. <개정 2020.03.01>

제3조(교양교과 편성 원칙) ① 교양교과는 교양 필수와 교양 선택으로 구분한다.

② 교양교과는 다음 각 호의 편성 원칙을 충족하도록 편성해야 한다.

1. 교양교과를 5개 영역(인성, 건강체육, 실용교양, 글로벌문화, 직업기초능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03.01>
2. 삭제 <2020.03.01.>
3.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인성교과목을 교양 필수과목으로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0.03.01>
4. 삭제 <2020.03.01.>

제4조(교양교육 평가) ① 교양과장은 매년 교양교육 운영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0.03.01>

② 교양과장은 평가결과를 교양교육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교양교육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의한 후 개선사항 도출한다.

③ 심의결과는 다음 학년도 교양 교육과정의 편성에 반영한다.

제5조(교과목 신설 및 폐지) ① 교양교육운영위원회는 제4조 교양교육 평가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과목의 신설 또는 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1. 신설 교과목은 산업체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분석이나 기존 교양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도출되어야 하고, 제2조에 기술된 교양 교육목표 및 인재상에 부합하여야 한다.
2. 교양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결과 교양교육 목표나 인재상에 부합하지 않거나 상대적 인 중요성이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을 폐지할 수 있다.

② 교양 교과목 신설 및 폐지는 교양교육운영위원회 및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단 NCS직업기초능력 교과목은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 직업기초능

력 및 기초학습능력 향상위원회,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개정 2020.03.01>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